

## 좌초 위협의 국민연금 개혁

### □ 국민연금개혁 관련 최근 동향

-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나(4.25)
  - 사학법 연계 처리 등 정치적 입장차로 법안심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였음

#### ※ 합의안의 주요내용

- (국민연금) 보험료: 9%유지, 급여율: 60%→50%('08)→ 40%('28)
- (기초노령연금) : 지급액을 '28년까지 10%로 단계적 인상
-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, 기초노령연금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,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논의

- 주요 정당들은 지난 5.30일 6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국민연금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표명하였으나,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현재 아무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

- 연금개혁의 추동력은 지난 4월 국회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고, 의원들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도도 저하된 상황임

※ 열린우리당 의원 탈당, 한나라당내 후보 경선 등

- 더구나,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시(6.14)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적 언급이 있었으나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음

- 일부 국책연구기관의 '국민연금→사학연금' 전환문제가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어,
  - 국책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, 공적연금 간 형평성, 특수직역 연금 개혁의 시급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,
  - 국책연구기관의 사학연금 전환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

## □ 국민연금개혁 실패시 문제점

### ○ 국민연금 재정불안 문제

- 급속한 고령화로 '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인 37.3%에 달하여 근로자의 노령부양비가 급증하며,
  - ※ 노인인구비율 9.1%('05)→15.7%('10)→24.1('30)→37.3%('50)
  - ※ 노령부양비 1.3명('05)→1.5명('10)→3.7명('30)→6.9명('50)
- 현행 국민연금은 모든 세대가 본인이 낸 것보다 두 배 이상을 받아가는 저부담-고급여 체계라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함
  - ※ 현행 부담·급여를 유지할 경우 연금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씩, 연간 30조원씩 쌓이는 것으로 분석(KDI)
- 이러한 저출산·고령화의 인구 환경과 제도 내부의 문제점으로 인해 2036년에는 최초로 수지적자가 발생하고,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되어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,
-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후에는 2050년에 보험료로 소득의 30%를 납부해야 하므로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됨

## ○ 국민 손해 지속 발생

- 국민연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아래와 같은 가입자 편의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급여·징수 등 30여 가지의 제도개선 사항이 미루어지고 있어,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등 총 50만 여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음

- ① 감액노령연금의 지급률 인상
- ② 군복무 크레딧 및 ③ 출산 크레딧 부여
- ④ 구직급여와 연금급여의 중복수급 가능
- ⑤ 병급조정 완화규정, ⑥ 남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완화
- ⑦ 연기연금제도 도입 등

※ 파이낸셜뉴스 보도('07.5.21) '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7가지 이유' 題下

## ○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기회 상실

- 주요정당 간 합의안에 따라 제1단계 국민연금 개혁을 처리한 후,
- 「연금제도개선위원회」를 구성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률 상향 조정 시기와 방법,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, 공적연금 개선 등 제2단계 개혁을 추진할 수순이 예정되어 있으나,
- 제1단계 개혁이 실패하면 다음 단계의 개혁이 불투명해져 국가적인 기회의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임